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 및 과태료 규정 신설 〉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12900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 근거 마련	2
2.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마련	9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5. 9. 11.
3.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2, 제24조).

Ⅲ. 검토의견

1.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절차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을 신고수리한 날부터로 규정하도록 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 ----- ----- ----- ----- -----,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u>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④ <u>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u>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한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제4항에 따른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신고,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제6항-----.

제12조의2(관상어양식업의 폐업신고) ① 제12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2024년 말 기준 관상어양식업 신고 현황은 153건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상어양식업 연도별 현황(건,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172	137	130	145	139	151	138	147	146	153
면적	246,072	223,798	148,267	189,391	164,347	174,699	118,906	116,196	112,751	147,897

< 지자체별 관상어양식업 현황(㎡, 천마리)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건수	153	11	7	6	6	3	4	1	43	3	27	14	2	6	6	14
면적	147,897	967	2,628	243	534	345	177	391	32,089	215	72,376	17,348	2,050	7,545	2,036	8,953
생산량	12,319	58	243	41	158	378	8	30	3,626	70	1,123	838	3	73	5,015	655

자료 : 해양수산부

그런데, 관상어양식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²⁾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변경·폐업신고에 관한 근거가 없어 행정청에서 자체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2) 관상어양식업 신고사항 : 신고인, 양식생물 종류, 시설면적, 수조의 수면적(해양수산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2.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적으로 처리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는 관상어양식업을 변경·폐업하게 된 경우 변경·폐업에 관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등 관상어산업 육성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업무·행정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상어산업 및 수출입 현황 >

○ (산업현황) 관상어산업은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가 지속 확대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국내 '18년 대비 16.5%↑)

* (추정 산업규모) 국제 : ('19) 7,274억달러 / 국내 : ('18) 4,181억 → ('19) 4,874억

< '19년 기준, 국내 관상어산업 종합 규모(백만원) >

합계	양식업	용품생산업	수입업**	유통판매업***	연구·개발	전시·체험시설
487,383	11,713	90,325	72,446	155,207	1,062	156,630

* 출처 : KMI(제2차 관상어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자료 발췌, '21.3월)

** 수입업(72,446백만) : 관상생물(7,781), 관련용품(64,665)

*** 유통·판매업(155,207백만) : 대형마트(9,000), 전문로드숍(100,547), 수입업(16,200), 유통업(29,459)

○ (수출입) 국내 관상어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고, 수출액은 고가품종(가오리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

< 관상어 수출입 현황(천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0.5	3.4	2.4	10.7	7.4	1.54	-	1.2	165.6	0.3
수입	4,365	4,980	5,090	6,126	5,350	5,713	6,459	5,822	4,894	4,494

* 출처 : 수출입 검역(수품원) / ** 수입품종 : 담수(구피·금붕어 등), 해수(클라운피쉬·새뱅이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신고,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 등 유사 제도에서도 변경·폐업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상어양식업을 신고한 자가 변경·폐업할 경우의 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상어산업 육성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신고업에 대한 변경·폐업 유사 입법례 >

- 수산업법 : 어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한 사항 중 변경·폐업 신고하려는 경우를 각각 규정
* 신고(제48조), 변경·폐업 신고(제49조)
- 양곡관리법 :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한 사항 중 변경·폐업 신고하려는 경우를 각각 규정
* 신고(제19조제1항), 변경신고(제19조제1항 후단), 폐업신고(제19조제5항)
- 비료관리법 : 비료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한 사항 중 변경·폐업 신고하려는 경우를 각각 규정
* 신고(제12조제1항), 변경·폐업 신고(제12조제2항)
- 농약관리법 :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한 사항 중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를 규정
* 신고(제3조의2제1항), 변경 신고(제3조의2제1항 후단), 폐업신고(제6조제1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2조제1항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신고사항은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³⁾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12조제7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신고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2조제1항에는 신고증명서 발급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⁵⁾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일반 국민의 행정 편익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3)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상어양식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입법례 >

○ 「낙시관리및육성법」

제39조(폐업신고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낙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낙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상어양식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와 관상어양식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3. (생략) <u><신설></u>	제24조(과태료) ① ----- ----- -----. 1. 제12조제1항 전단을 ----- ----- ----- 2. 3.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u>③ 제1항 및 제2항</u>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에서 관상어양식업의 변경·폐업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변경·폐업신고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정할 때에는 동일 유형의 과태료 상한액 입법례,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분야의 영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⁶⁾,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100만원은 유사 입법례에서의 변경·폐업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금액과 관상어양식업의 규모⁷⁾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됨.

6)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0), p.548

7) 어업생산금액 비교(2024년 기준) :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연근해어업	해면양식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4조 1,763억원	3조 7,118억원	1조 5,258억원	6,779억원

* 관상어양식업의 경우 **117억 1,300만원**(2019년 기준)으로 다른 어업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적음
(출처 : KMI 제2차 관상어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자료(2021.3.))

< 최초 신고, 변경·폐업신고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 비교 >

법률명	해당 분야	내용	과태료 상한액(법률)		
			신고 (허가양식업은 허가)	변경신고	폐업신고
관상어산업법	관상어양식업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규정	미규정
수산업법	신고어업	허가어업 외의 나잠어업, 맨손어업 등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어업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양식산업 발전법	허가양식업	육상해수양식업, 육상등 내수양식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양식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양식업)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양곡의 제조업, 제분업, 도정업 등을 하기 위해 신고하는 가공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비료관리법	비료수입업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농약관리법	수출입식물 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 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 의 처

02)6788-5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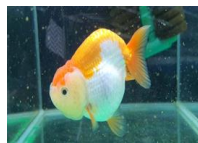
□ 관상어산업 개요

-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체험·연구 등 관상어와 관상어용품**을 생산·제공하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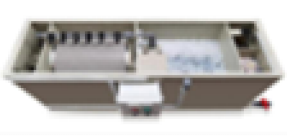
* 열대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

** 관상어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사육에 필요한 용품

< 국내 관상생물 연구·개발 현황 >

담수 (중앙내수면 연구소)					
	구피류	금강모치	잔가시고기	난주	홍백(4단)
해수 (아열대 수산연구소)					
	클라운피쉬	백작 클라운피쉬	수기미	클리너슈림프	스타폴립

< 관상어 생산·유통시설 현황 >

			
순환여과식 수조	빌딩형 수조	단백질제거기	산소발생기
			
수중모터	드럼스크린	사료배합기	정수시설

□ 관상어양식업의 양식시설 기준

- 「관상어산업법」 제12조에 따라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함

①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② 양식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 관상어양식업 현황('24년 기준)

- (신고현황) 국내 관상어 양식업 신고현황은 153건이며, 주요 양식품종은 비단잉어, 금붕어, 구피, 플래티, 관상새우 등을 생산

< 관상어양식업 연도별 현황(건, m²)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172	137	130	145	139	151	138	147	146	153
면적	246,072	223,798	148,267	189,391	164,347	174,699	118,906	116,196	112,751	147,897

< 지자체별 관상어양식업 현황(m², 천마리)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건수	153	11	7	6	6	3	4	1	43	3	27	14	2	6	6	14
면적	147,897	967	2,628	243	534	345	177	391	32,089	215	72,376	17,348	2,050	7,545	2,036	8,953
생산량	12,319	58	243	41	158	378	8	30	3,626	70	1,123	838	3	73	5,015	655

- (산업현황) 관상어산업은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수요가 지속 확대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국내 '18년 대비 16.5%↑)

* (추정 산업규모) 국제 : ('19) 7,274억달러 / 국내 : ('18) 4,181억 → ('19) 4,874억

< '19년 기준, 국내 관상어산업 종합 규모(백만원) >

합계	양식업	용품생산업	수입업**	유통·판매업***	연구·개발	전시·체험시설
487,383	11,713	90,325	72,446	155,207	1,062	156,630

* 출처 : KMI(제2차 관상어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자료 발췌, '21.3월)

** 수입업(72,446백만) : 관상생물(7,781), 관련용품(64,665)

*** 유통·판매업(155,207백만) : 대형마트(9,000), 전문로드숍(100,547), 수입업(16,200), 유통업(29,459)

- (수출입) 국내 관상어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고, 수출액은 고가품종(가오리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0.5	3.4	2.4	10.7	7.4	1.54	-	1.2	165.6	0.3
수입	4,365	4,980	5,090	6,126	5,350	5,713	6,459	5,822	4,894	4,494

* 출처 : 수출입 검역(수품원) / ** 수입품종 : 담수(구피·금붕어 등), 해수(클라운피쉬·새뱅이 등)

- (소비현황) 생물 특성상 사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상어 입문에 진입장벽은 낮아 열대 소형어 중심으로 실내 반려문화 확산 추세

* 소비시장 현황 : 구피(38.6%) > 금붕어(28.7%) > 테트라(13.4%) > 베타(9.1%) 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상어 연구·개발(담수·해수), 환동해관상어펫플라자 건립(경북 경주) 등 관상어산업 육성 기반 지원
- (기간/예산) '17년~계속 / 2,445백만원

사업명	'24년	'25년(A)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 관상어산업육성(농특)	4,145	2,445	1,765	△680	△27.8
- 연구개발지원(국고 100%, 수과원)	745	745	745	-	-
- 관상어체험·전시시설설치(단양, 종료)	2,800	-	-	△2,800	순감
- 환동해 관상어펫플라자 건립(국고 50%, 경주)	600	1,500	530	△970	△64.7
- 제3차 관상어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부경대)	-	200	-	△200	순감

□ 사업내용

- 「관상어산업법」이 '13.8월 제정되면서 관상어의 연구·생산 등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17년부터 사업 추진
 - (연구·개발) 관상가치가 있는 종을 중심으로 품종개량 등 산업화기반 연구
 - * 수과원 중앙내수면연구소(455백만원) : 구피, 아쿠아포닉스 양식시스템 개발 등
 - ** 수과원 아열대수산연구소(290백만원) : 백작흰동가리 산란 유도, 흰동가리 품종 분류법 등
 - (환동해관상어펫 건립) 관상어 아트미디어돔, 체험·전시시설 등 건립
 - * '24~'28(경북 경주) : 202억원(국비 101, 지방비 101) / 투자계획 : ('24) 6억원(실시설계) → ('25) 15 → ('26) 5.3 → ('27) 45 → ('28) 29.7
 - (제3차 기본계획 용역) 관상어산업의 환경변화·여건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종합계획('26~'30) 수립 용역 추진
 - * 2억원 / 연구기간 : '25.3.10~'26.1.3(10개월) / 수행기관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